

DISCLAIMER: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e [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published in the sustainable finance section of ICMA’s website. is the official version of the document. This translation is provided for general reference only.”

2018년 6월

지속가능채권 지침

서론

녹색채권원칙(GBP)과 사회적채권원칙(SBP) (이하 원칙들) 모두에 부합하는 채권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채권의 거래들은 채권 발행자금의 사용과 관련한 지속적인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ICMA 웹사이트의 녹색채권원칙 및 사회적채권원칙 페이지에서 거래의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이런 의미에서 원칙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지속가능채권 시장에서 원칙들의 투명성 및 공시 관련 지침의 적용을 돕기 위해 발간되었다. 원칙들의 네 가지 공통 핵심 부분과 외부 검토 및 영향 보고의 활용에 대한 권고는 지속가능채권에도 적용된다.

이 문서는 지속가능채권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기대를 더 잘 예측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발행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예상되거나 이미 실현된 긍정적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의 검토와 평가를 위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하며 정보 및 방법론의 공시가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인수기관을 지원한다.

지속가능채권 정의

지속가능채권이란 발행자금을 녹색 프로젝트와 사회적 프로젝트 모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자금 조달 및 리파이낸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GBP와 SBP 모두의 4개 핵심 요소에 부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GBP는 자금이 배분된 녹색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있으며, SBP는 사회적 프로젝트와 연관된다.

일부 사회적 프로젝트는 환경적 혜택도 있을 수 있고 일부 녹색 프로젝트는 사회적 혜택이 있을 수 있기에 발행자금의 사용에 따라 채권을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할 지는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을 감안해 발행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지속가능채권이라는 용어는 해당 원칙의 4개의 핵심 요소에 부합하지 않은 채권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실

권고된 양식과 기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관련 자료는 ICMA 웹사이트의 녹색채권원칙, 사회적채권원칙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작성 완료된 양식은 상단 링크에 있는 지침에 따라 시장 정보 공개 차원에서 자료실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주석

녹색 프로젝트와 사회적 프로젝트가 결합된 경우 GBP와 SBP의 부록 1에 각기 명시된 녹색채권 및 사회적채권의 네 유형은 지속가능채권에도 적용된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와 연계된 채권을 포함해 지속가능성 테마 채권 시장이 있음이 인정된다. 해당 채권은 지속가능한 활동을 주로 또는 전적으로 영위하는 기관이 발행하나 해당 원칙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관련 내용을 통지 받아야 하고, 지속가능채권 또는 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 언급함으로써 GBP 또는 SBP의 내용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발행기관은 가능한 경우 기 발행된 지속가능성이나 지속가능한개발목표 또는 기타 테마 채권을 대상으로 관련 GBP 및 SBP 모범사례(예: 보고)를 채택하고 향후 해당 원칙에 부합하는 신규 채권을 발행하도록 권장된다.

GBP 및 SBP와 지속가능한개발목표 간 대응관계를 나타낸 맵핑 자료는 발행기관, 투자자, 채권시장 참여자가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채권 및 프로그램의 자금 활용 목표와 지속가능한개발목표 간의 비교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다. ICMA 웹사이트의 녹색채권원칙 및 사회적채권원칙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면책 문구

지속가능채권원칙은 자율 지침으로서 지속가능채권이나 기타 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제안하거나 그 어떠한 형태(세금, 법률, 환경, 회계, 규제)의 구체적인 조언을 담고 있지 않다. 지속가능채권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의 모든 개인에 어떠한 권리나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발행기관은 지속가능채권원칙을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채택하고 이행하며, 지속가능채권 발행 결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지속가능채권의 인수기관은 발행기관이 지속가능채권 관련 요건이나 순발행자금의 사용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 법률 및 법령, 규정과 지속가능채권원칙에 명시된 지침이 상충되는 경우 관련 현지 법률 및 법령 규정이 우선한다.

